

 <b>행정안전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작성과	자치분권제도과
	<b>2018년 10월 31일(수) 조간</b> <b>(10. 30. 16:30 이후)부터</b>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과 장 이방무 사무관 정찬형 사무관 정준호 사무관 윤보라
		연락처	02-2100-3810 02-2100-3789

## 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.

- 행안부,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-
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‘제6회 지방자치의 날’을 맞아 ‘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.
  - ‘88년 전부 개정 이후,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.
  - 문재인 정부는 “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”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‘자치분권 종합계획’을 확정 한 바 있으며,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.
-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
  - 첫째,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,
  - 둘째,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,
  - 셋째,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.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**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**
    -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‘주민자치’ 요소(종래 중앙-지방간 ‘단체자치’ 중심)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

-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‘주민조례발안제’를 도입하며,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·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  - 더불어 주민조례발안,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(주민감사 전치주의)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 참여를 촉진한다.(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·소환은 19세 유지)
-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(현행 ‘단체장중심형’) 인구규모·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.
  -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도 근거만 마련하고,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.

## ②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

-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·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.
  -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‘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.
-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·도 부단체장 1명(인구 500만 이상 2명)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·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.
  - 실·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.
-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.
  -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,
  - 시도·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·예산·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‘정책지원전문인력’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.

###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·책임성 확보

-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,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.  
※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마련
-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(현행 재량) 하며,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(윤리심사자문위원회,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)를 신설한다.
-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·군·구의 위법한 처분·부작위에 대해 시·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·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  
※ (현행) 시·도가 시·군·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 불가

### ④ 중앙-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

-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'국가의 지도·감독'에서 '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'로 변경한다.
  - 또한 대통령-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'(가칭)자치발전협력회의'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.  
※ 대통령의장, 국무총리·시도지사협회장·공동부의장, 시도지사·지방대협의체장, 기재·행안장관 등
  - 교통,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.  
※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,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, 규약으로 재원조달 등
- 오늘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,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
-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“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,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,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

## I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

-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활성화로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이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.
- 첫째, 생활현장 중심의 주민참여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 목적규정에 대한민국이 ‘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’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
  - ※ (현행) ‘단체자치 중심’,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‘주민자치 원리’ 부재
  - 주민이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·집행과정에 참여할 일반적 권리를 신설한다.
  - ※ (현행) ①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, ②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, ③ 참정권 등으로 주민 권리가 제한적·소극적으로 규정

- 둘째,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**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'주민조례발안제'**를 도입하여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한다.
  - 또한, 주민감사청구 서명인수의 상한을 **완화\***하는 한편, 제기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,
    - \* (시·도) 500 → 300명, (50만 이상 대도시) 300 → 200명, (시·군·구) 200 → 150명
  - 주민조례발안,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**18세로 하향 조정\***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로 하였다.
    - \* 다만, 주민소환(선거권과 형평 유지), 주민투표(의결권 행사 성격)은 현행 19세 유지
  
- 셋째,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제외 대상 이외에 '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여 **주민투표 대상\***을 확대하고,
  - \* (현행)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허용하여 조례로 주민투표 대상 부담 축소 가능
  -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**개표요건은 폐지**하는 대신, 소수에 의한 결정 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**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1/4 이상이 찬성**해야 하는 **확정요건**을 도입한다.
    - ※ (현행) 투표율 1/3 미달 시 개표를 하지 않고 주민투표 무산
  - 또한, 온라인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'**온라인 청구제**'를 도입한다.
    - ※ (현행) ▲종이서명부에 자필로 개인정보 기재 후 서명, ▲서명부 유효성 수기 심사·확인 (개선) ▲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, ▲서명부 유효성 전산 심사·확인
  
- 넷째, 주민소환제도의 경우, **청구요건\***을 자치단체의 **인구규모별로 세분화**하여 **완화**하고,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을 도입하는 한편, '**온라인 청구제**'도 도입한다.
  - \* (현행) 시·도지사: 청구권자 총수의 10%, 시·군·구청장: 15%, 지역구 지방의원: 20%

- 다섯째, 주민 주도로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선정된 마을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**주민자치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기본사항과 국가 및 자치단체의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**
  -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다.
    - ※ (현행) 「지방분권법」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(읍6/면21/동68, 총95개)
- 여섯째, 현재 **기관분리형**(단체장 중심형)으로 **획일화**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**기관구성 형태**를 인구규모·재정여건 등에 따라 **주민투표로**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**자치조직권을 보장**한다.
  -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만 근거만 마련하고,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.
    - ※ 기관구성 형태(예시) : ▲단체장 중심형(현행), ▲단체장 권한 분산형, ▲책임행정관형, ▲위원회형

## II 실질적 자치권 확대

-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.
  - 첫째, 사무배분 기준으로 **보충성·불경합성·자기책임성 원칙을 규정**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에 **원칙 준수 의무를 부과**하여 국가-자치단체 간, 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을 합리화한다.
    - 또한, 법령 제·개정 시 사무배분 적정성,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‘**자치분권 영향평가**’를 도입한다.
  - 둘째, 시·도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법정 부단체장\*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·도 부단체장 1명(인구 500만 이상 2명)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·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.
    - \* 서울·경기 : ▲행정2 ▲정무1, 그 외 시·도 : ▲행정1 ▲정무1

- 또한,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현행 자치단체 실·국 수의 20% 범위 내에서 시·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\*를 우선 추진하고,
    - \* 한시기구로 도입하여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 성과평가로 상시화 여부 판단
  - 아울러,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(예: 본청 기준인력의 1%)만 두고 이외 사항을 자율화하는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.
    - ※ '19년 연구용역 및 자치단체·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'20년까지 제도 개선
  - 자율성 부여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별 핵심 성과지표를 비교·공개하고, 조직운영 결과의 지방의회 제출, 언론·홈페이지 공개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.
- 셋째, 시·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·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·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.
- ※ 소규모로 운영되는 시·군·구의회는 시·도의회 운영상황을 평가한 후 적용 여부 검토(사무직원 시·도 평균 : 103명, 시·군·구 평균 : 17명)
- 또한,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안 발의 정족수, 집회일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,
  - 시·도 및 시·군·구 의회에 조례 제·개정, 행정사무 감사·조사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다.
    - ※ (현행) 제주도만 의원정수 1/2범위에서 정책자문위원(전문인력) 운영(제주특별법 §39)

### Ⅲ 자치단체 투명성·책임성 제고

-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.
  - 첫째,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,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.

- 둘째, 자치사무에 관한 시·군·구의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시·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·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을 확보하고,
  - ※ (현행) 시·도가 시·군·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 불가
-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균등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가-자치단체 간, 자치단체 상호 간 연대 및 협력의무를 신설한다.
- 셋째,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(현행: 설치여부는 재량) 하고,
  - 윤리특위 산하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, 윤리특위가 징계 심사 전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여 지방의원의 윤리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.
  - 아울러, 지방의회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.

#### IV 중앙-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

-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고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.
- 첫째, 대통령-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'(가칭) 자치발전협력회의'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구체적 사항은 별도 법률로 규정한다.
  - ※ (구성) 대통령(의장), 국무총리 및 시·도지사협의회장(공동부의장), 시·도지사, 지방4대협의체장, 기재·행안부장관, 국조실장, 법제처장 등
- 둘째,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'국가의 지도·감독'에서 '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'로 변경하고, 국가의 조언·지도·권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한다.

- 셋째,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한다.
  - ※ 인수위원 정수 : 광역 20명, 기초 15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
  
- 넷째, 교통,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.
  - ※ (구성)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,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, 규약으로 재원조달, 사무위임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가능
  
- 또한 자치단체 간 공동·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시·도의 행·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,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간소화\*한다.
  - \* (현행) 설립 시 지방의회 의결 필요 → (개선) 설립 시 지방의회에 보고
  
- 다섯째,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 (특례시)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.
  - ※ 법령상 기초자치단체 종류 신설은 주소변경 등으로 주민혼란 및 행정비용 발생 우려

## 참고 2

##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과제 목록

### □ 추진배경

-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
-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
- 중앙-지방간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

### □ 주요 과제 : 24개 과제

분야	과제
<b>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</b> (10개 과제)	① 주민자치 원리 강화 (목적규정에 ‘주민자치’ 원리 명시)
	② 주민 참여권 강화 (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적극 참여할 권리 신설)
	③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(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, 개·폐 청구)
	④ 조례 제정, 개·폐 청구요건 완화 (인구규모별 청구요건 세분화)
	⑤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 (시도 : 500→300, 시·군·구 : 200→150)
	⑥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(주민조례발안, 감사청구 18세)
	⑦ 주민투표제도 개선 (청구대상 확대, 개표요건 폐지, 확정요건 도입)
	⑧ 주민소환제도 개선 (인구규모별 청구요건 세분화, 개표요건 폐지, 확정요건 도입)
	⑨ 주민자치회 활성화 (분권특별법 → 지방자치법 설치·운영 근거 변경)
	⑩ 기관구성 다양화 (주민투표로 기관구성 변경 가능, 별도법으로 구체적 사항 마련)
<b>실질적 자치권 확대</b> (5개 과제)	① 국가-지방 사무배분 (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 의무 마련, 자치분권 영향평가제 도입)
	②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(필요시 시도 특정목적 부단체장 설치 자율성 부여)
	③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(시·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)
	④ 정책지원 전문인력 (입법, 예산 등 의정활동 지원)
	⑤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(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)
<b>자치단체 투명성·책임성 제고</b> (4개 과제)	① 정보공개 확대 (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, 의회 의정활동 공개)
	②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(국가·자치단체 간, 자치단체 상호 간 연대협력의무 신설)
	③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강화 (사군구의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국의 보충적 관여)
	④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(윤리특위 및 윤리자문위 설치 의무화)
<b>중앙-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</b> (5개 과제)	① 중앙-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(자치발전협력회의 제도화)
	②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(시도 20인, 시군구 15인 이내)
	③ 특별지방자치단체 (규약·기관구성·운영 규정 마련)
	④ 행정협의회 활성화 (절차 간소화, 중앙의 지원 근거 마련)
	⑤ 대도시 특례 (‘특례시’ 행정명칭 부여)

※ (기타) 지방재정 법률과의 법체계 정비, 참정권 조항 정비

### 참고 3

##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개선사항

### 1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

분야	현행	개선
주민자치 원리 강화	-단체자치 중심	-목적규정에 '주민자치' 원리 명시
주민참여권 강화	-주민 권리 제한적 : ①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②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참정권	-주민 권리 확대 :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
주민조례 발안제 도입	-조례안 제정, 개·폐 청구시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	-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
조례 제정, 개·폐 청구요건 완화	-시·도·50만 이상 대도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/100~1/70 -시·군·구는 1/50~1/20	-800만 이상 : 1/200 이하 -800만 미만 : 1/150 이하 -100만 이상 市 : 1/150 이하 -50~100만 : 1/100 이하 -10~50만 : 1/70 이하 -5~10만 : 1/50 이하 -5만 이하 : 1/20 이하
주민감사 청구 제도개선	-서명인수 상한: 시·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·군·구 200명 -청구가능기간 2년	-상한 하향조정: 시·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·군·구 150명 -청구가능기간 3년
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	-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	-조례발안, 주민감사, 주민소송은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
주민투표 제도개선	-청구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-실시구역 최소단위를 읍면동 으로 제한 -개표요건: 청구권자 1/3이상 투표시 개표	-청구대상 확대, 주요결정사항은 모두 포함되도록 명시 -실시구역 제한 폐지 -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요건 도입
주민소환 제도개선	-청구요건: 시·도지사는 10/100 시·군·구청장은 15/100 지방의원은 20/100 -개표요건: 청구권자 1/3이상 투표시 개표	-청구요건 완화: 인구규모에 따라 설정된 구간별로 15%에서 차등적 완화 -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요건 도입
주민자치회 활성화	-「지방분권법」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시범실시	-「지방자치법」에 근거 마련하고 행·재정적 지원근거 마련
기관구성 다양화	-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	-주민투표 거쳐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(기관분리형·통합형 등) * 추후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 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

## 2 실질적 자치권 확대

분야	현행	개선
국가-지방 사무배분	-원칙, 의무 등 미규정되어 구속력 미흡	-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 의무 부과 -법령 제·개정시 자치분권 영향 평가 실시 의무화 및 지방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
조직운영 자율성 확대	-서울·경기 부단체장 : 행정2, 정무1 -그외 시·도 부단체장 : 행정1, 정무1	-시·도에 필요시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 1명(500만 이상 자치단체는 2명) 설치 자율성 부여
지방의회 인사권 독립	-시·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·도지사 권한	-시·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·도의회의장에게 부여
정책지원 전문인력	-제주도만 의원정수 1/2범위에서 정책자문위원(전문인력) 운영	-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입법, 예산 등 의정 활동 지원
지방의회 운영 자율화	-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	-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

## 3 자치단체 투명성·책임성 제고

분야	현행	개선
정보공개 확대	-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·방법 등 미규정 -의회 의정활동이 분산적으로 공개되어 접근성 하락	-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·방법 등에 대해 일반규정 신설 -의회 의정활동 종합적 공개하여 주민 접근성 제고
국정통합성 근거규정	-국정통합성 미규정	-주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-자치단체, 자치단체간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
자치사무 수행책임성	-시·군·구의 위법 처분·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·이행명령 불가	-국가가 보충적으로(시·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) 시·군·구의 위법한 처분·부작위에 시정·이행명령 가능
지방의회 책임성 확보	-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-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	-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-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, 의견청취 의무화

## 4 중앙-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

분야	현행	개선
중앙-지방 협력관계 제도화	-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법적근거 미규정	-‘자치발전협력회의’ 설치 및 운영: (의장) 대통령 (공동부의장) 국무총리, 시도지사 협의회장
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	-근거, 운영기준 등 미규정되어 과도 운영 등 혼란 발생	-광역 20명, 기초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
특별지방자치단체	-특별지방자치단체 세부사항 미규정	-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 규정
행정협의회 활성화	-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-중앙 시도 행·재정적 지원근거 미규정	-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-중앙 시도 행·재정적 지원근거 마련
대도시 특례	-대도시 인정기준 근거 미규정	-100만 이상 대도시를 ‘특례시’로 명명하고 위임근거 마련

## 참고 4

##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개선사항 비교

1-1

###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“지방자치법 전부개정”

주민자치 원리강화	▪ 단체자치 중심	▪ 목적규정에 ‘주민자치’ 원리 명시
주민참여권 강화	▪ 주민 권리 제한적 ①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②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③참정권	▪ 주민 권리 확대 :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
주민조례 발안제 도입	▪ 조례안 제정, 개·폐 청구시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	▪ 조례안을 의회에 주민이 직접 제출
조례 제정, 개·폐 청구요건 완화	▪ 시·도·50만 이상 대도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/100~1/70 ▪ 시·군·구는 1/50~1/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800만 이상 : 1/200 이하</li> <li>▪ 800만 미만 : 1/150 이하</li> <li>▪ 100만 이상 市 : 1/150 이하</li> <li>▪ 50~100만 : 1/100이하</li> <li>▪ 10~50만 : 1/70 이하</li> <li>▪ 5~10만 : 1/50 이하</li> <li>▪ 5만 이하 : 1/20 이하</li> </ul>
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	▪ 시·도 500명 ▪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▪ 시·군·구 200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·도 300명</li> <li>▪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</li> <li>▪ 시·군·구 150명</li> </ul>

1-2

###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“지방자치법 전부개정”

청구권 기준연령 완화	▪ 19세 이상 주민은 청구 가능	▪ 조례발안, 주민감사청구, 주민소송은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
주민투표 제도개선	▪ 청구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▪ 실시구역 최소단위를 읍면동으로 제한 ▪ 청구권자 1/3 이상 투표시 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청구대상 확대, 주요결정사항은 모두 포함되도록 명시</li> <li>▪ 실시구역 제한 폐지</li> <li>▪ 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요건 도입</li> </ul>
주민소환 제도개선	▪ 청구요건 : 시·도지사는 10/100 시·군·구청장은 15/100 지방의원은 20/100 ▪ 청구권자 1/3이상 투표시 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청구요건 완화 : 인구규모에 따라 설정된 구간별로 15%에서 차등적 완화</li> <li>▪ 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요건 도입</li> </ul>
주민자치회 활성화	▪ 「지방분권법」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	▪ 「지방자치법」에 근거 마련하고 행·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
기관구성 다양화	▪ 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주민투표 거쳐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(기관분리형·통합형 등) ※ 지방자치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별도 법률 제정</li> </ul>

2

##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“지방자치법 전부개정”

<b>국가-지방 사무배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칙, 의무 등 미규정 되어 구속력 미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 의무 부과</li> <li>법령 제·개정시 자치분권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및 지방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</li> </ul>
<b>조직운영 자율성 확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울·경기 부단체장 : 행정2, 정무1</li> <li>그외 시·도 부단체장 : 행정1, 정무1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7개 시·도에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 1명 (500만 이상 자치단체는 2명) 필요시 자율적으로 설치</li> </ul>
<b>지방의회 인사권 독립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·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·도지사 권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·도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·도의회의장에게 부여</li> </ul>
<b>정책지원 전문인력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주도만 의원정수 1/2범위에서 정책자문위원(전문인력)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(입법, 예산 등 의정활동 지원) 도입근거 마련</li> </ul>
<b>지방의회 운영 자율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</li> </ul>

3

##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“지방자치법 전부개정”

<b>정보공개 확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·방법 등 미규정</li> <li>의회 의정활동이 분산적으로 공개되어 접근성 하락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·방법 등에 대해 일반규정 신설</li> <li>의회 의정활동 종합적 공개하여 주민 접근성 제고</li> </ul>
<b>국정통합성 근거규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정통합성 미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-자치단체, 자치단체간 연대 및 협력의무 신설</li> </ul>
<b>자치사무 수행책임성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·군·구의 위법 처분·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·이행명령 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가 보충적으로(시·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) 시·군·구의 위법한 처분·부작위에 시정·이행명령 가능</li> </ul>
<b>지방의회 책임성 확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</li> <li>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윤리특위 설치 의무화</li> <li>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, 의견청취 의무화</li> </ul>

##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“지방자치법 전부개정”

### 중앙-지방 협력관계 제도화

- 중앙-지방 협의기구로서 '중앙지방정책협의회' 운영

- '자치발전협력회의' 설치 및 운영 : (의장) 대통령  
(공동부의장) 국무총리,  
시도지사협의회장

###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

- 근거, 운영기준 등 미규정 되어 과도 운영 등 혼란 발생

- 광역 20명, 기초 15명 이내에서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

### 특별지방 자치단체

- 특별지방자치단체 세부사항 미규정

-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, 구성 등 구체화

### 행정협의회 활성화

- 설립 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
- 중앙, 시·도 행·재정적 지원근거 미규정

- 설립 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
- 중앙, 시·도 행·재정적 지원근거 마련

### 대도시 특례

- 대도시 인정기준 근거 미규정

- 100만 이상 대도시에 '특례시' 행정적 명칭 부여하고 위임근거 마련